

# 기술분쟁 조정·중재

- »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·중재위원회의 조정·중재를 통해 당사자간 원만하고 신속한 분쟁해결 지원
- (조정) 분쟁 당사자간 합의 유도(재판상 화해의 효력)
  - (중재) 분쟁에 대한 중재판정(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)
- \* 중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신청인과 별도의 중재합의가 필요하며, 중재결과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으로 분쟁의 종국적 해결(소송불가)

## 조정·중재 장점

전문성	객관성	신속성	경제성
<p>5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전·현직 판사, 변호사 등 직능위원</li> <li>· 기계, 소재 등 기술분야 전문위원</li> </ul>	<p>공정하고 합리적인 합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조정부 또는 중재부의 사실조사</li> <li>·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의 도출</li> </ul>	<p>재판보다 빠른 분쟁 해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조정의 경우 3개월 소요</li> <li>· 중재의 경우 5개월 소요</li> </ul>	<p>부담없는 해결 비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조정 또는 중재에 소요되는 비용지원</li> <li>·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지원</li> <li>· 소송비용 지원</li> <li>· 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</li> </ul>

## 신청대상

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, 「중견기업법 시행령」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

\* 제외대상 : 유흥·향락업,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·폐업 중인 중소기업

## 지원내용

전·현직 법조인, 기술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이 중립적으로 분쟁해결을 지원하며, 법적 대응 비용 지원

- (비용지원) 분쟁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법률대리인 선임비용, 소송비용, 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

지원유형	지원내용	지원금액
조정·중재 대리인 선임비용	·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한 기업의 법률대리인(변호사) 선임비용 지원	최대 1,000만원
소송비용	· 조정 불성립 사건이 소송으로 연계되는 경우, 지원심사를 거쳐 소송비용 지원	최대 2,000만원
기술가치평가 비용	· 조정부가 기술가치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, 기술분쟁 활용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	최대 5,000만원

## 지원절차

해당 조정(중재)사건에 대한 조정(중재)부를 구성하고 조정(중재)회의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 후 조정안 제시 (중재 판정)



### 조정·중재 절차



### 분쟁범위

중소기업 기술(산업재산권, 저작권, 영업비밀, 경영정보 등)

### 수수료

신청금액에 따라 상이

구분	신청금액	수수료(부가세 별도)
조정	1억원 미만	10,000원
	1억원 이상 ~ 10억원 미만	30,000원
	10억원 이상	50,000원
	조정대상 금액이 없는 경우	10,000원
중재	1천만원 미만	20,000원
	1천만원 이상 ~ 1억원 미만	5,000원+신청금액×0.15%
	1억원 이상 ~ 10억원 미만	55,000원+신청금액×0.10%
	10억원 이상	555,000원+신청금액×0.05%
	중재대상 금액이 없는 경우	20,000원

\* 수수료 감면대상: 창업 후 7년 미만의 중소기업, 벤처기업 확인서 보유기업,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보유기업

### 상담·접수

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·중재위원회(02-368-8768~9)

### 신청방법

기술보호홀타리(www.ultari.go.kr) 온라인 신청 및 이메일/우편 신청

\* 이메일 : solomon@win-win.or.kr